

朝鮮後期 濟州地方 分財文記의 研究(I)

-長田里 姜泰福氏 所藏文記를 중심으로-

高昌錫*

목 차

1. 序言
2. 資料의 整理
3. 分財의 實態
4. 結論

1. 序 言

이 글은 北濟州郡 涯月邑 長田里 姜泰福氏 소장의 古文書 중에서 分財文記 8건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對象이 된 것은 分給文記 7건과 和會文記 1건이다.¹⁾

고문서 소장자인 강태복씨는 晉州姜氏 念通公派 後孫이며, 그의 先代는 원래 上加里에 거주하다가 朝鮮朝 英祖 45년(1765) 경부터²⁾ 長田里로 이주하여 살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서들은 姜氏家門 조상들이 가락리와 장전리 일대에서 여러 백년 살아온 生活史일 뿐 아니라 朝鮮後期 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상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라 하겠다.

최근에 와서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그것이 朝鮮中期 이래의 전통사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史料라 할 고문서는 아직도 제대로 발굴되지 않은 채, 개개인의 집에 死藏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연구 또한 日淺한 실정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를 극복하고 고문서의 충분한 활용을 기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발굴하여 분석해 왔으며,³⁾ 이 글도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1) 원래의 계획은 分財文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 볼 예정으로 別給文記 등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나 紙面 관계로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었다.

2) 姜氏宅에 소장되어 있는 「準戶口」에 의하면 姜大翁 때부터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필자가 지금까지 고문서를 발굴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朝鮮後期 濟州田畝文記의 研究」 『耽羅文化』 13, 1993. 2. pp.81-123.

분재문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17세기 중반까지는 아들·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던 것이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차 장자 우대, 남녀차별의 차등분배로 바뀌어지고, 朱子家禮의 보급과 장려로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奉祀條가 강조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⁴⁾

이 글에서는 8건의 분재문기를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개개 문서의 분석 작업을 통해 조선 중기 이래 제주도 서북부 지방의 사회·경제적 실상과 문화의 단편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자료의 〈 〉 부분은 落字된 곳을 복원해 본 것이다. 그리고 家事의 바깥 외중에서도 본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준 姜泰福씨에게 감사를 드린다(자료의 띄어쓰기는 필자).

2. 資料의 整理

(1) 康熙肆拾肆年乙酉 拾貳月貳拾日 各子女等處 都許衿記(56×42Cm)

右都許衿記事段 矣身鰥夫以 年將八十 前頭生<死不知 畧干>田地 各子息等亦中 平均分衿 後錄爲去乎 日後□□□□ 田地斗數 品劣好不好 同生等不睦 相猜則無理□□□□ 不爭和睦 鎮長使用爲乎矣 如有雜談之弊則□□□□□□□□

一 長子泰聲衿 長田里內員 祖上田 皮牟柒斗落只□□□□ 買得田 粟壹斗伍升落只段 衿給是齊 加

「朝鮮中期 奴婢의 所有權 紛爭 -1662년 濟州牧官立案-」 『玄旨 金榮墩博士 華甲紀念 濟州文化研究』 1993. 12. pp. 423-460.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耽羅文化』 14, 1994. 2. pp. 43-82.

「高明浩의 妻 金氏의 孝烈」 『星主』 5, 1995. 4. pp.197-207.

「朝鮮後期 濟州島 土地賣買의 實狀」 『耽羅文化』 16,1996. 2. pp. 113-161.

4) 분재문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姜仁求: 「栗谷先生 男妹分財記考」 『文化財』 4, 文化財管理局, 1969

崔在錫: 「朝鮮時代 相續制에 關한 研究」 『歷史學報』 55·56合輯號, 1972

李光奎: 「朝鮮王朝時代의 財產相續」 『韓國學報』 3, 1976

金斗憲: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서울 大學校 出版部, 1980

崔淳姬: 「權大運諸同生和會成文」 『文化財』 13, 文化財管理局, 1980

李樹健: 「慶北地方 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金容晚: 「朝鮮時代 均分相續制에 關한 一研究」 『大丘史學』 23, 大丘史學會, 1983

李鍾日: 「朝鮮前期의 戶11·家族·財產相續制研究」 『國史館論叢』 14, 1990

鄭求福: 「金務의 分財記(1429)에 關한 研究」 『古文書研究』 1, 1991

鄭肯植: 「16세기 奉祀財產의 實態」 『古文書研究』 9·10合輯號, 1996

李海濤: 「湖西 士族家門의 分財記 5例」 『古文書研究』 9·10合輯號, 1996

時勿員 祖上田 皮牟□□ 落只 里以西邊 亭自代員 金城處買得田 粟壹斗伍升落只段 初謁日別給

一 次子泰晉衿 長田里內員 祖上田 皮牟柒斗落只果 相換田 道內山北邊 皮牟壹石落只 及夫面西南邊 高色斤旨員 別得 皮牟壹石落只段 衿給是齊 夫面里南邊員 買得田 皮牟貳石落只 夫面里西邊 怪面員 別給田 皮牟拾斗落只段 初謁日別給爲有置 後考施行

一 末子泰韻衿 長田里內員 祖上 皮牟伍斗落只 及族男味同員 別得田 粟壹升落只段 衿給是齊 里以西 卽應成水員 祖上田 皮牟壹石落只 加時勿員 崔卜處 相換田 皮牟柒斗落只段 初謁日別給爲有置

一 長女召史衿 里內員 祖上田家坐地 及自門路北邊外田并 皮牟參斗落只 及草家貳鞭段 衿給是齊 里以南邊 占達員 祖上田 皮牟壹石伍斗落只 亭自代員 金城處買得田 粟柒升落只段 成婚別給爲有置

一 次女召史衿 里內員 祖上田家前以南邊 皮牟壹斗落只 及里以東邊 坪代員 奴日朱處買得田 肆升落只 同員 祖上田以流來爲如可 異姓四寸奴厚男 徵一族時 矣同等完議後 同色馬壹匹乙 矣方成備給價以折定田 粟壹斗落只 里以西邊 牟貳斗落只 兼爲別給事

一 末女召史代孫衿 家北邊 洪奉己處買得田 皮牟參升落只段 衿給是遺 里以西邊 臚尹山洞員 祖上田 粟柒升落只 族男味洞員 買得田貳庫 及皮牟壹石落只段 成婚日別給

財主 展力副尉 兼司僕 金(手決)

筆執 儒生 梁致成(手決)

(2) 雍正參年乙巳 正月貳拾柒日 和會文(46×39.5Cm)

右和會文爲 賦命險兇 長幼叱分 長成已嫁而已 其次三姊妹 俱是稚兒之日 父母連年去世 畧干田地 未得區處乙仍于 父母主生前 女婿別給之物 當以不爲舉論 而不過 同生成婚是遺 餘皆未婚 而父母主別世 則不可以 別給均施 同別給之物并以 一併并錄 祭條設置後 各各和會分衿爲去乎 或有雜談者 將此文下正者

祭條 每與味員 趙時安處相換田 皮牟壹石伍斗付 及外祖父主前衿得爲在 三每陽所謂得只田員 粟種壹斗付 及我羅奴洪先員 粟種伍升付 及戶婢汝今一所生 奴萬金年二十一乙酉生 身壹口 永爲施行爲齊

長甥姜潤道衿 別月山員 金潤玉 姜取璜兩處 買得合田 粟種貳斗付 及里內員 李揖處買得田 麻子參升付 及木橋旨員 婢億生處買得田 粟種肆升付行

次甥胃老衿 松樂員 金潤玉處買得田 粟種壹斗伍升付 及里內員 母主初謁別給代田 皮牟貳斗付 及木橋旨員 婢億生處買得田 粟肆升付行

長姊代其子高萬觀衿 松樂員 趙繼胤處買得田折半 北邊捌升付 及木橋旨員 婢億生處買得田 既已別給 是在貳庫 粟種壹斗付 及郭岳押浦員 祖上傳來田 皮牟貳石付只行

末妹姜氏衿 松樂員 趙繼胤處買得田折半 南邊粟種玖升付 及下加路員 梁遂赫處買得田 皮牟柒斗付 及木橋旨員 婢億生處買得田 粟種壹斗付行

孿甥厚夏衿 每叱古泉員 奴金孫處買得田 粟種陸升付行

長甥 渭道(手決)

次甥 渭老(手決)

長姊代 其子 高萬觀(手決)

末妹 姜氏(右手寸)

筆執 族婿 儒生 梁仁赫(手決)

(3) 乾隆元年丙辰 正月貳拾參日 各子女等處都許衿記(78.5×41Cm)

右都許衿記文事段 矣身嫡無男子 但有二女 □□□□之境 不幸已失喪妻 無依失所 故勢不得已 作
〈妾〉□□ 得二男子 所當年長後 各各分衿事是乎矣 矣年將〈老 不知〉早晚乙仍于 畧干田地 掃墳條除
出 餘存者以賤產并 〈各子息等〉處 平均分衿爲去乎 田地斗數品劣 好不好 不睦相〈爭 論〉以不孝是乎等以
從文籍 元財主區處施行爲如 遠〈給之〉道可衿 因順和睦是乎矣 若或子孫中 雜談之端是去等 〈論〉以其不
孝 依此施行事

外三寸叔主前 相換爲有在 水山里內員 異姓四寸妹 梁氏家坐田 □□ 壹斗付只田庫 則父母主掃墳條
施行爲齊

一 嫡長女衿 妻父主前 衿得是在 長田里內員 家坐田 皮牟壹石付及家一 里以南邊 加時水員 梁致殷處
買得田 皮牟 □□ 付只 同里南邊 妻父主前 成婚別得田 告達員 皮牟壹石付只 □□ 云處買得田 粟伍
升付只田庫等物 衿給是遺 同里以西邊 妻父主前 衿得田 粟種柒升付只段 同田中埋置爲遺 □□ 掃墳條
施行爲齊

一 次女衿 長田里內員 梁世贊處買得田 皮牟壹 □□□ 壹 同里以南邊 加時水員 皮牟柒斗付只 同里
以北邊 流來田 粟種壹斗付只 同里以西南邊 東海旨員 買得田 皮牟拾斗付只田等施行

一 孿長男山益衿 水山里內員 外三寸叔主前 家基代田 皮牟 □□ 付只 同里以南邊 安壯去伊員 祖上
流來田 粟種參升付只 同里以北邊 祖上流來田 新堂員 粟參升付只等乙施行

一 次男山成衿 水山里內員 祖上流來田 皮牟柒升付只 □ 長先員 祖上流來田 粟伍升付只 及同員 乾
畚租種□□□□以施行

財主 高(手決)

筆執 長女婿 幼學 姜渭老(手決)

(4) 乾隆十九年甲戌 九月 日 各子女處 別給都許文(71.5×52Cm)

右文爲 我素艱窘 畧干田地 子女等初謁成婚之日別給 而所餘者 數畝薄田 則不可以除別給 具成衿給
例叱分不喻 別給或不無不均 故別給之物 并計衿下 先書已別給 次書加衿 平均分衿 別錄爲去乎 將此執

用爲旂 無後三寸二叔父母 掃墳奉祭之道 亦爲論理 付列末尾 依此遵行

一 祭條 別月山員 傳來田 皮牟陸石付內 南邊參石付 及明月鎮西門外 月溪員 夫氏處買得水畚 租種壹斗伍升付 此畚段 承重孫婦 初謁之日 已許爲有在果 祭無畚故 奉祀條還錄 依此施行者

一 長子故聖翁衿 已別給 別月山員 傳來田 皮牟陸石付內 北邊參石付及 加給 三寸叔母前別得 加樂里內員 徐家垵田 皮牟捌斗付 及於道內 山□□ 卍叱介畚員 眞外邊傳來田 皮牟壹石付 東來田員草田 粟貳斗肆升付內 居中粟捌升付 東西林藪及南 □世鳳印

一 二子故泰翁衿 已別給 開與只旨員 奴順 □處 買得田 粟壹斗伍升付 加給 加樂里西洞員 高振豪處 買得田 皮牟肆斗付 及木橋旨金千同員 梁仁赫處 買得田 粟貳升付 及登子員參合 粟伍升付 及東來田 太好員草田 粟柒升付印

一 三子文翁衿 已別給 三寸叔母前別得 頓田員 皮牟壹石伍斗付 加給 地方芑員 奴先卜處買得田 參合 粟柒升付 梅花泉員 粟伍升付 東來田員草田 粟貳斗肆升內 南邊捌升付 東林藪及姜亨周 南周始發印

一 四子德翁衿 已別給 父主前別得 地見田員 皮牟壹石付 及加樂里內員 文世後處買得 皮牟肆斗付 加給 下加樂里 東吾終終員 金尙堅處買得 皮牟壹石付 及東來員草田 粟貳斗肆升付內 北邊粟捌升付 東南 姜中良印

一 長女梁言植衿 已別給 加樂里內員 汝分處買得 麻子壹斗肆升付 及光令里南孝子門員 妻邊傳來田 粟壹斗付 加給 光令里南巖木洞員連牆貳合 粟壹斗伍升付 及加樂里西眞木員 皮牟參斗付印

一 二女金重兼 已別給 加樂里北先 □□員 任世秀處買得 皮牟壹石付 及同里南白只旨員 三寸叔母前 別得 皮牟參斗付 加給 都近里南孟與池員 妻邊傳來田 皮牟拾斗付印

一 三女吳廷掄衿 已別得 大靜江丁邊水員 傳來畚 租種貳斗付 及加樂里內員 同生弟處買得田 皮牟參斗付 加給 老伊金洞山員 奴海立處買得 柒合粟陸升付 同員 李才允處買得 貳合粟壹升付 里內員 李楨處 買得田 麻子參升付印

追 無後三寸叔父母主掃墳奉祭 各各指名 使之奉行傳後爲乎矣 無後傍親奉祭與先世奉祀有異 承重家 若無後而直孫之外 可無移外之道是在果 此則次知之家 若無子而至移於外孫之境 則不如不設 而不免廢祀之歎 幸移於外手之境是去等 吾矣子孫會議 傳之姪孫 切勿歸外之地者

一 仲叔父母主掃墳祭 加樂里內員 高司業垵田 皮牟參斗付 於加樂員 祖上田 長田一半西邊 皮牟壹石付 木橋旨員金千洞 貳合粟肆升付段 第二亡子泰翁 次知奉祀 傳後次印

一 季叔父母主掃墳祭條 加樂西洞城田員 皮牟拾貳斗付 於加樂員 祖上田 長田一半東邊 皮牟壹石付 別月山員 安世逸處買得田 粟捌升付 所彙芑員草田 肆合粟柒升付段 第三子文翁 次知奉行 傳後次印

財主 自筆 留鄉座首 父 姜渭道(手決)

證 同生弟 留鄉別監 姜渭老(手決)

(5) 嘉慶□□□□ 捌月拾玖日 子女等都許文(138×40Cm)

右都許事段 吾八字峙迫 初娶產得二女 而早死是遺 後聚產得三男一女 而仲男及末女 以痘疫八歲夭 則不勝慘矣 吾矣三寸叔父主 一無子女 而吾之末弟定養爲有如可 十五歲早夭 則反爲無依之境 而招吾以 姪子之禮 同居陪養 則家財·田畝·駒犢之物 許與爲有如乎 吾年八十一歲 而身病不離 覆不安席 食不 甘味 餘日不多 誠爲寒心也 流傳田畝·駒犢 及自起買得田畝等物 合而計之後 三寸夫妻主掃祭 吾矣夫 妻掃祭條 成置是遺 畧千餘庫 子女等處 各分衿爲乎矣 仲子及末女 年未滿而死矣 則勢不勝慘矣 故一庫 田掃條 別爲成置 而各各列錄于左爲去乎 從文執持爲 旆 掃祭則或有主孫微弱許賣之境是良置 次孫防禁 不賣 和義變通 從聽遺跡則 雖歸於地下 豈不欲樂哉 汝等銘心不忘 永久施行事

一 三寸夫妻主掃祭田畝則 能先員 皮牟壹石玖斗付 標東姜仁範田 古達員 皮牟壹石付 標東高萬夫田 加時勿員 慕坐田 粟種柒升付 標東高進芳田 流水岩里以西北邊 頓木員 畝 貳夜味合 水種柒升付 標東姜 聖堂田 水山公泉員 乾畝壹夜味 租種壹斗付 標東朴士宗畝印

一 吾矣夫妻掃祭田畝則 里內員 姜氏處流田反賣 買得田 貳庫合 皮牟壹石付 標東安處道及梁佑道田 同里內員 流來田貳庫合 皮牟拾參斗付 標東姜興仁及梁佑道田 能先員流來 乾畝參夜味合 租種貳斗付 標東高昌道 馬古伊水員 乾畝二夜味合 租種參升付 標南小路 洞生伊員 故□□□ 莊伊員 以妻邊衿得 田 以姜聖大田相換是在 皮牟壹石付 標南小路印

一 長子應新處衿 里北真木同山員 流田貳庫合 皮牟柒斗付 標南間路及其矣買田 里內員 高家基流來 田參庫合 皮牟陸斗付 門路并付以門路 標東爲間路 上加南邊 別月山員 皮牟陸石付內 南邊參石付 父母 主祭田 北邊參石付 宗姪子應周處買得 標西小路 亭子基員流田 粟種貳斗付 標東姜貴守田 同員 粟伍升 付段 亡子女掃條成置 而標東高漢翊田 月羅頂員 流來田 皮牟壹石付 長婦別給 標東姜翊佐田 古達不喻 畝員 梁元道處買得田 皮牟壹石伍斗付 標西北小路 成萬以田員 梁元發處相換田 粟種參升付 標西小路 頓基員 金亨日處買得田 皮牟參斗付 標東高萬富田 水山里北邊 坪代員 流來畝貳夜味合 乾租種壹斗肆 升付 南門路 甫飲水員 乾畝壹夜味 租種柒升付 標東徑路 松岩木員 皮牟伍斗付 標東梁同元田 高莫先處 買得印

一 次子應龍處衿 才公田員 流來田 皮牟壹石付 標南間路 亭才基員 流來田 粟種壹斗伍升付 標東小路 頓基員 流來田 皮牟伍斗付 標東營田 卞成伊水員 朴氏處買得田 皮牟壹石伍斗付 標南小路池 牛路里東 邊 北旨員 高允瑞處買得田 粟種壹斗付 標東姜千云田 自前伊旨員 梁友孟處買得田 皮牟貳石付 標西大 川 里內員 梁起文處買得田 麻子參斗付 標北間路 同員 金道應處買得田 皮牟貳斗付 標北間路 同員 姜時 礪處買得田 粟種貳升付 標南間路印

一 長女處衿 上加遠場員流田 皮牟壹石付 標東小路 雌馬壹匹 雌牛壹首(印)

一 次女處衿 里以南邊 者卽員 高允柱處買得田 皮牟壹石壹斗付 標西小路 雌馬壹匹印

一 長孫聖顯處衿 流來田 四明伊員 皮牟壹石付 標北小路 大連伊旨員 梁元道處買得田 粟種壹斗付 標

北間路 同員 流來田 粟種參升付 標東金進文田印

財主 自筆執 父 留鄉別監 姜(手決)

(6) 道光十二年癸巳 四月拾肆日 一女五男等處 都許文(172×39Cm)

右都許文事段 子年當七十有五 而餘日不多 則事當有畧于田畝 小小等物分給 茲有先人之例也 子年四十 所生一女二男 不幸喪室是遺 四十七歲遵父命 作少家高氏 生三男 敬謹奉養父母主 深愛而謹陪 終孝則其情與內室金氏生時 一無少違矣 父母主生時 如前愛之 則法載孝經 子□歸哀也哉 無違於父母之命 以此解諭戒辭於汝矣 □□觀論理 銘心勿替 恭敬如事繼母爲姊 子當同居棄世 □汝矣等其恩亦莫大易嗟嗟 少于不過追遠已而 子先逝是良置 魂魄生時 居家陪祀 毫無違命而遵行 謹思孝理爲姊 父母主前後三位 從祖父母兩位 吾夫妻兩位 少家高氏一位 掃祭條各各成置之外 餘在者各各列錄 分給爲去乎 依分錄遵行後 □□紛紜 若或有不遵之端 則何面目立於世乎 銘心不忘爲姊 後若有主孫窘急 不勝奉行是去等 衆孫并力 耕食掃祭田 謹以奉祀 而無歸於他手 斥賣之境是遺 以望人頌 可爲篤厚於永世矣 汝矣衆子等 不食子言 而明明傳教於次次後裔 銘心銘心不忘不忘謹施事

一 從祖父母主兩位掃祭田 地境田員 皮牟壹石柒斗付 標北中路 水山公泉味員 乾畚一夜味 租種壹斗付 標西姜翊佐畚 流水岩終心堂員 水畚二夜味合 租伍升 標東姜大仁田印

一 父母主三位掃祭田 里內前田員一庫 皮牟拾參斗付 標北小路 里內員 姜氏右永四庫合 皮牟壹石付 標東趙京集·安處道·許宗田 能先伊員 乾畚三夜味合 租種貳斗付 標北高應大畚 馬古伊水員 水畚二夜味合 租種伍升付 標南小路印

一 吾夫妻兩位掃祭田 上加別月山員 父主宗侗處 買得衿下田 皮牟參石付 祖父主祭條田 主祀姜時殷 能先伊員 召吉高進秀處自起買得 乾畚一夜味 租種壹斗付 標北姜赫畚印

一 長子姜元悅衿 水田員 流來田 皮牟壹石伍斗付 標西北小路 地境田員 流來田 皮牟壹石付 標東高萬富田 長同山員 梁京岑處 買得田 粟種壹斗付 標南姜吳輔·梁應日田 里內舊基 南其矣家坐 麻子貳斗付 標東姜時新家 遠門路并付 里內數屹月老 流來田 皮牟貳斗付 標北金利浩家坐田 臥牛岳員 姜永完處 買得田 皮牟壹石付 標南其妹衿給田 外家衿得田 敦浦境 非乙於田員 粟種壹斗付 木橋旨員 先世流來田 東至小路一字連 西至釜田并合 粟種壹斗付 標南廢場城 北其弟等 衿給田 同員 福萬同山員 粟種壹斗付 標北東山 水山泥田 橋月員 乾畚貳夜味合 租種壹斗貳升付 流來畚 標門墻路 雌馬一匹 雌牛一首 農牛俱械 壹首 斗入鼎子俱蓋壹坐 鋤子壹坐 家舍壹(鞭)材木買給 又父主居舍三間壹鞭下 於音月老員 粟種肆升付 亡弟掃祭條施行 任意許給 標北梁京彥田 □□□□印

一 次子姜允悅衿 能先員 今德許萬處買得 皮牟壹石伍斗付 標西北小路 地境田員 今德許萬處 買得田 二合 皮牟壹石付 標西姜日彬田 北小路 念首旨員 嚴莊俞復遠處 買得田 粟種壹斗伍升付 標西北小路 城田員 金亨一處 買得田 皮牟壹石付 同員 流來田 皮牟貳斗付二庫田 標東趙京集·姜奉玉·高萬富等田

里內員 其矣家坐東邊 皮牟伍斗付 又北邊 皮牟壹斗付 基地 皮牟陸斗付 合并□□□□ 掃祭田 北吳永圭田 家舍貳鞭 雌馬·雌牛各壹首 農牛俱械壹首 斗入鼎子俱蓋壹坐 木橋員 世世流來田數合 粟種壹斗付 標東小路 西藪德 南汝長兄田印

一 妹氏子息衿 召吉姜永完處 買得田 臥乎岳員 皮牟壹石拾斗付 標南康千攪田 里內員 承父處買得田 皮牟肆斗付 標西朴時□ 家坐田 雌馬壹匹 農牛壹首 斗入鼎子俱蓋壹坐 雌牛壹首代 正木參足以給印

一 少家高氏處 舅姑至敬供養 父母主遺言 故父母主祭田 里內前田 南邊一圍 皮牟參斗付 標南文亨喆門路 西洞路 北祭田 水山泥田洞員 終尾乾畚壹夜味 租種參升付 標南姜奉玉畚 雌馬壹匹 雌牛壹首 特以別給 生前耕食是如可 死後其下 祭條成置印

一 三子姜言悅衿 同好召旨同山員 嚴莊俞復遠處買田 皮牟柒斗付 標東北小路 公泉味員 皮牟陸斗付 高召吏處買得 而標東姜時新田 亭子基員 粟種壹斗貳升付內 以中層墻分半 粟種柒升付 流來田而標東姜貴太·姜在悅等田 召吉射場員 宗四寸處買得田 皮牟壹石付內 中層墻分半 北皮牟柒斗伍升付 標北小路 木橋旨員數合 粟壹斗付 標東小路 南允悅衿田 西藪德 雌牛壹首 雌馬壹匹 斗入鼎子俱蓋壹坐 家舍三間一鞭 材木伐給 又其母買得田 皮(牟)伍斗付印

一 四子姜云悅衿 召吉射場員 宗四寸處買得田 皮牟壹石付內 中層墻分半 南皮牟柒斗伍升付 標北其兄衿給田 宗南伊洞員 衿給田 皮牟肆斗付 標西小路 亭子基員 粟壹斗貳升付內 中層墻分半北 粟種伍升付 標南其兄衿給田 木橋旨員 所謂敦旨田上下二庫合 粟種壹斗參升付 標南其長兄衿給田 西廢小路 東藪德 里內古基 麻子貳斗付 標南宗孫家坐 雌牛壹首 斗入鼎子俱蓋壹坐 家舍三間一鞭材木伐給次 又其母衿給田 井實成黃堂員 粟種壹斗伍升付印

一 五子姜貴悅衿 宗南伊洞員 父主姜永完處 買得田 粟種陸升付 標西小路 同員 皮牟肆斗付 所臥南田員 衿給田 皮牟陸斗付 標西妹氏衿給田 次南同山員 粟種陸升付 標西小路 買得 許伊進月老 流來田 皮牟貳斗付 標北間路 里內員 高仁□ 處 買得田 皮牟拾貳斗付內 貳斗付家坐 又貳斗付 高召史處買得并入 標西南間路 其餘鼎子 些少器等物 農牛以 同居末子并給印

元財主 自筆執 前座首(手決)

(7) 道光貳拾年庚子 二月拾肆日 五男一女處 都許文(81×39.5Cm)

右都許文事段 子年當至六旬有三 而身病滋起 不敢生於追遠 則事當有畧干田畚 大小凡物分處 自有先人之例也 子年四十六 生四男二女 而不幸喪室 則其後小家同居 生一男是遺 內室末女成婚之後身故 誠甚可痛 爲先掃祭分秩法當 故從曾祖父母主兩位 祖父母主三位 父母主兩位掃祭 既已論理成置 而吾矣夫妻兩位 及小家金氏亦一體 各各掃祭成置後 餘在田畚 大小凡物畧干 汝矣等處 平均分給是矣 無嫡庶均給 汝矣最末子 汝兄恭敬 如事父母 則其憂從此逝矣 子死歸於黃天 喪需凡節加於汝兄 則兄友弟恭 自在其中 子之傳言 各別從乞施行 而嗟嗟 衆子等汝矣最末弟 如此則各別憂恤 汝矣五男一女 仁和義睦 如此

遺言遵行 則吾死歸於地下 魂情安樂 不然則汝等豈於立于世乎 嗚呼 孝子等敬于予言 非我言模 惟謂汝之仁和之道也 此道明心不忘不忘 而毫末不違 可謂孝子 以此施行事

後

一 從曾祖父母主兩位掃祭田 地境田員 皮牟壹石柒斗付 標北小路 水山公泉味員 乾畚壹夜味 租種壹斗付 標西姜鳳漢畚 流水岩終心堂員 水畚貳夜味合 租種伍升付 標東姜大仁田印

一 祖父母主三位掃祭田 里內前田員 皮牟拾參斗付 標北小路 里內姜氏右永員 貳庫合 皮牟壹石付 標東趙景集及姜仁熙田 能先伊員 乾畚參夜味合 租種貳斗付 標北高永樂畚 馬古伊水員 水畚貳夜味 租種伍升付 標南小路印

一 父母主兩位掃祭田 上加南邊 別月山員 皮牟參石付 標南曾祖父祭田 西中路 能先伊員 乾畚壹夜味 租種壹斗付 標北姜日彬畚印

一 吾矣兩位掃祭田 長同山員 粟種壹斗付 標南姜浩輔及梁應逸田 水山泥田 橋木員 乾畚貳夜味合 租種壹斗貳升付 標南橋路印

一 長子仁永處衿 里西邊於音月員 流來田 粟種肆升付 標北梁景彥田 旨田員 流來田 里東南邊 皮牟伍斗付 標東高元吉田 里內員流來田 藪月路 皮牟壹斗付 標北蔡光益田 里西邊火連伊旨員 流來田 粟種貳升付 標東小路 召吉南邊木橋 福萬伊同山員 流來田 粟種壹斗付 標北福萬伊同山 家基流來田 麻子貳斗付 標東姜時新家坐遠門路 并付 家鞭三間貳鞭 及農牛俱械 斗入鼎子俱壹倍印

一 二子仁赫處衿 里東南邊水田員 流來田 皮牟拾斗付內 半分南邊捌斗付 標西小路 大連伊旨員 流來田 粟種伍升付 標北小路 木橋員 流來田 粟種肆升付 標南廢場城 西末子衿 東三子衿 不農牛壹首 雌牛壹首 斗入鼎子壹介 家基里內員 買得相換田 麻子壹斗伍升付 標姪子仁鳳田印

一 三子仁倝處衿 里南邊四明伊田員 流來田 皮牟壹石付內 半分南片柒斗伍升付 標南姜奉玉田 家基代衿 里西邊大連伊旨員 流來田 粟種參升付 標北小路 旨田員 流來田 皮牟玖斗付 標西四寸才悅田 木橋員 粟種陸升付 標東小路 南廢場城 升入鼎子壹介印

一 四子仁弘處衿 里南邊四明伊田員 流來田 皮牟壹石付內 半分北片柒斗伍升付 標北小路 家基代衿 里東南邊 流來田水田員 皮牟貳拾斗付內 分計北片拾壹斗付 標北小路 木橋田員 流來田 粟種伍升付 標南廢路 西廢場城 雌牛壹首印

一 五子仁弼處衿 臥乎岳員 流來田 皮牟壹石付 標西高光玉田 家基買得相換田 麻子壹斗伍升付 標西姪子門路 草家四間壹鞭 大連旨員 流來田 粟貳升付 標北中路 小家掃祭田成置并付 雌牛壹首印

一 女氏處衿 妻衿給相換田 文掌議同山員 粟種肆升付 標南小路印

元財主 留鄉別監 姜(手決)

筆執 弟 姜云悅(手決)

(8) 同治十二年癸酉 七月二十八日 四男一女處都許文(105.5×32Cm)

右都許文事段 予之年當八旬 運數身病最極未差 然略干田庫分處 亦自有先人之例也 爲重掃祭 故子之從高祖父母主兩位 曾祖父母主三位 祖父母主兩位 父母主兩位 吾矣夫妻兩位 連世成置 而予之生四兄弟 內 長子眼盲 實爲愴痛 末子宗伍出繼也 子家青孫 爲先祭祀奉謹隨行 完久不違 銘心不忘遵行事

後

一 從高祖父母主兩位掃祭田 地境田員 皮牟壹石柒斗付 標北小路 水山公泉味員 乾畚壹夜味 租種壹斗付 標西姜胤漢雀 流水岩 從心堂員 水畚貳夜味 合租種伍升付 標東姜大仁田印

一 曾祖父母主三位掃祭田 里內前田員 皮牟拾參斗付 標北小路 里內 姜氏右永員 貳庫合 皮牟壹石付 標東趙敬集及姜仁希田 能先伊員 乾畚參夜味 合租種貳斗付 標北高水樂畚 馬古伊水員 水畚貳夜味 合租種伍升付 標南小路印

一 祖父母主兩位掃祭田 加樂南邊 別月山員 皮牟參石付 揮田還買以 槓入伊載員 粟種陸升付 標東小路 及臥岳員 皮牟肆斗付 標南末子有寬田 能先伊員 乾畚壹夜味 租種壹斗付 標北姜日彬畚印

一 父母主兩位掃祭田 長同山員 粟種柒升付 標南姜浩輔及梁應日田 水山泥田 標木員 乾畚貳夜味 合租種壹斗貳升付 標南橋路印

吾矣夫妻兩位掃祭田 於音月路員 粟種肆升付 標北朴在權田 里內家基 麻子 遠門路併 貳斗付 標東姜宗杓家坐田印

一 長子宗明給田 里東邊 月羅木員 貳庫合 皮牟拾壹斗付內 東邊貳斗付 中子給給 標東高行吉田 家舍貳鞭 農牛一首俱械 木橋旨員 粟種參升付 標北福萬伊同山印

一 仲子宗寬給田 東南邊旨田員 皮牟伍斗付 標東梁以淑田 月羅木員 皮牟貳斗付 標東高行吉田 木橋旨員 粟種參升付 標東梁在吉田印

一 三子出繼宗伍給田 里南邊泥田水員 粟種肆升付 北小路<印>

一 四子有寬給田 里南邊平伊田員 皮牟參斗付 標北姜弘寬田 里西邊大連伊旨員 粟種貳升付 標東小路 木橋伊旨員 粟種參升付 標西舊路印

一 女給田 新德里南邊 石藪田員 粟種參升付 東北高承集田印

財主 青衿 前 齋任

3. 分財의 實態

(1)의 都許衿記는 康熙⁵⁾ 44년 乙酉, 즉 肅宗 31년(1705) 12월 20일에 재산의 소유주(財主)인 展力副尉 兼司僕 金氏가 자녀들 모두에게 소유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 증거로 각자의 몫을 기록하여 작성한 分財

5) 康熙(1662~1722)는 중국 淸나라 聖宗이 사용했던 年號이다.

文書이다. 명칭이 都許分給記로 되어 있으나 실은 財主가 생전에 祖業, 또는 당대에 획득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괄하여 나누어 주는 分給文記에 속한다. 서두에서 재주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흠아비로 나이가 머지않아 80이 되니,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약간의 田地를 각 자식들에게 ‘平均分給’ 즉, 똑 같이 몫을 나누어 주고 그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므로, 훗날 田地의 면적(斗數)이나 토질의 좋고 나쁨(品劣)을 들어, 同生(형제자매)들이 不睦하고 서로 시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和睦을 깨지 말고 오래도록 사용(경작)하되, 만일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분기를 가지고 官廳에 신고하여 바로 잡으라>.”

즉 위 내용은 소유 재산을 ‘平均分給’ 한다는 것과 재산 분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경계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財主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급해 주는 문서임으로, 재주 자신과 筆執만이 입회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手決을 하였다. 分財 내용을 <표 1>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區分	地境	取得	作物	面積(落只)	分給內譯	備考
長子 泰聲給	長田里內員 □□□□ 加時勿員 亭日代員	祖上田	皮牟	7斗落只	給給	4필지 [피모 2, 속 2] 미상
		買得田	粟	1斗5升落只		
		祖上田	皮牟	□□落只	初講日別給	
		買得田	粟	1斗5升落只		
次子 泰音給	長田里內員 道內山北邊 高色斤旨員 夫面里南邊 怪面員	祖上田	皮牟	7斗落只	給給	5필지 [피모 5] 5석 2두
		相換田	皮牟	1石落只		
		別得田	皮牟	1石路只	初講日別給	
		買得田	皮牟	2石落只		
別給田	皮牟	10斗落只				
末子 泰韻給	長田里內員 族男味同員 午應成木員 加時勿員	祖上田	皮牟	5斗落只	給給	4필지 [피모 3, 속 1] 1석 12두 1승
		別得田	粟	1升落只		
		祖上田	皮牟	1石落只	初講日別給	
		相換田	皮牟	7斗落只		
長女 召史給	里內家坐地 門路北邊外田 古達員 亭日代員	祖上田	皮牟	?	給給	4필지 [피모 3, 속 1] 1석 8두 7승 草家 2鞭
		?	皮牟	3斗落只(合)		
		祖上田	皮牟	1石5斗落只	成婚別給	
		買得田	粟	7升落只		
次女 召史給	里內員 坪代員 同員 里以西邊	祖上田	皮牟	1斗落只	別給	4필지 [미상] 4두 4승
		買得田	?	4升落只		
		祖上田	粟	1斗落只		
		?	牟	2斗落只		
末女 召史代孫給	家北邊 腰伊山洞員 族男味洞員	買得田	皮牟	3升落只	給給	3필지 [피모 2, 속종 1] 1석 1두
		祖上田	粟種	7升落只		
		買得田	皮牟	1石落只	成婚日別給(2곳)	

〈표 1〉에 의해 분할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나 그 면적, 재배 작물의 종류, 토지의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토지 소재지의 경우, 표기된 명칭은 순수하게 우리말로 된 표현을 漢字의 音 또는 訓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財主 재산의 所有來를 살펴보면 대체로 조상전래(祖業 10), 매득(7), 상환(2), 별득(2), 별급(1), 기타(2) 등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며, 파종 면적은 전체 24필지에 10석 8두 2승지기(탈락된 곳 제외)이다. 파종 작물은 皮牟(17), 粟種(6), 기타(1)의 순인데, 이를 밭의 등급으로 연계해 보면 피모 경작지가 상등전이고 속종 경작지가 하등전에 해당한다. 당시 제주지방에서는 재배 작물로서 토질의 우열을 가름해 왔던 것이다.

재산은 '平均分給' 즉, 똑 같이 몫을 나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약간의 차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財主의 뜻에 따라 분배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分財 내용을 살펴 보면, 3남 3녀 중 3남에게는 給급(給給)⁶⁾과 初謁日⁷⁾ 別給⁸⁾으로, 次女를 제외한 2녀에게는 給급과 成婚日 別給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초알일 별급은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맞이할 때 며느리에게, 성혼일 별급은 딸이 시집갈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給급만이 분재 때에 새로 주어진 것이며, 여기에 초알일이나 성혼일에 이미 별급한 것을 합쳐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분재는 자녀들의 결혼 때부터 행해져 왔다고 하겠다.

특히 장녀의 몫에는 草家 두 채가 포함되어 있고, 末女의 몫은 外孫이 대신 받고 있다. 차녀의 경우는, 거리왓(里內員)으로 집 앞 남쪽에 있는 祖上田인 皮牟(겉보리) 한 말지기와 奴(중) 日朱에게 매득한 밭으로 마을 동쪽 坪代員의 〈작물 미상〉 녀 되지기, 같은 지경의 祖上田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異姓四寸 奴 厚男의 〈同色馬⁹⁾를〉 一族에게서 징수할 때, 우리가 동등하게 完議한 뒤 동색마 한 필을 우리 쪽에서 마련해 준 값으로 환산한 粟[조] 한 말지기 밭과 마을 서쪽의 牟(보리) 두 말지기 밭을 합한 4필지를 모두 別給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분재 때에 새로 給급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都許衿記는 財主 展力副尉 兼司僕 金(手決)이라 한 것으로 보아 金氏(이름은 미상) 집안

6) 給급(給給의 吏讀語)은 곧 分給을 뜻한다.

7) 初謁日은 謁日을 말하는 것이며, 新婦가 시집에서 처음으로 媿父母를 뵈는 날이다. 이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고도 한다. 『經國大典』禮典 婚嫁條에는 「新婦謁舅姑 酒一盆 肴饌五器 從婢三人 奴十人 <堂上官女 則從婢四人 奴十四人>」이라 하여, "신부가 시부모(舅姑)를 뵈 때에는 술 한동이, 안주 다섯 그릇과 함께 따라 다니는 여종(從婢) 3인, 남종(奴) 10인을 데리고 간다. 堂上官의 딸은 從婢 4인, 奴 14인을 데리고 간다."고 하였다.

8) 別給은 財主가 자녀의 결혼이나 과거의 급제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를 축하하는 뜻으로 재산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贈與에 해당한다.

9) 牧子는 자신이 기르던 馬匹이 致死했을 경우에 그 증거로 가죽을 벗겨서 官에 바치게 되는데, 이 때 官에서는 馬籍에 올라 있는 것과 대조하여 毛色이 같을 경우에만 받아들여 故失馬(事故馬)로 처리한다. 그러나 毛色이 틀리거나 毛皮에 損傷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고 그 댓가로 牧子들에게 같은 색깔의 말을 징수하는데, 이를 同色馬라 하였다.

의 分財文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서가 姜氏 집안에 소장되고 있는 지,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딸 세분 중에서 한 분이 姜氏宅으로 출가했기 때문에 재산을 분배받을 때에 딸 혹은 사위에게 그 증거로 작성해 주었던 문서가 아닌가 한다. 당시에는 분급 내역을 증빙해 주기 위해 그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분급 대상자 수만큼 작성하여 한 통씩 나누어 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⁰⁾ 祭條¹¹⁾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당시 兩班家에서는 女孀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으레 그 딸이나 사위 이름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다.

(2)의 和會文은 雍正¹²⁾ 3년 乙巳, 즉 英祖 원년(1725) 정월 27일에 자식들이 부모 사후에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고 先代의 祭條와 함께 각자의 몫을 기재한 分財文書이다. 부모 생전에 分財의 지정이 없었던 경우¹³⁾에는 死後에 그 자식들의 합의에 의하여 부모의 유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그 증거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和會文書라 한다. 和會는 화목하게 만나서 상의한다는 뜻이다. 대개의 경우 和會에 의한 分財는 장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재 시기는 해당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뒤¹⁴⁾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服中에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文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선 序頭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타고난 운명이 험악하여 長姉(큰 누이)만이 성장하여 이미 출가하였을 뿐이고, 그 다음의 3남매는 모두 어린 아이였을 적에 부모가 해를 이어 세상을 떠나서 약간의 田地를 처분하지 못한 탓으로, 부모님 생전에 女孀(사위)에게 따로 떼어 준(別給)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舉論(참견)하지 않을 것이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이 成婚한 데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未婚인 채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똑같이 別給하여 均等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되, 同 別給한 재산을 합쳐서 모두 함께 기록하고 祭條를 설치한 후, 각기 합의하여 분급하므로 혹 答當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

고 하였고, 和會에는 長甥 渭道, 次甥 渭老 형제와 長姊 대신에 그 아들 高萬觀, 그리고 末妹 姜氏가 각

10) 실제로 분재문기를 정리해 본 결과 똑 같은 문기가 한두 장 더 있는 것도 있었다.

11) 祭條는 조상에 대한 祭禮와 先墓의 掃墳이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後代로 갈수록 제조를 둘러싸고 자손간에 일어나는 분쟁도 만만치가 않았다.

12) 雍正(1723~1735)은 淸나라 世宗이 사용한 연호이다.

13) 財主의 遺言에 의해 分財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4)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pp.245~246.

각 참여하여 手決 혹은 右手寸을 하였고, 筆執은 族婿인 儒生 梁仁赫이 담당하였는데 그도 手決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祭條로 재산의 일부를 먼저 떼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는 달리 奉祀條·承重條 등으로도 불렀으나 제주지방에서는 掃墳條라고도 하였다. 이는 관례상 장자 몫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제주 생전에 이미 別給된 토지에 대해 거론(참견)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이는 長妹의 성혼일에 별급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庶子에게도 재산의 일부가 분할되고는 있으나 和會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당시의 社會史를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각자의 분급 내용을 <표 2>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條 項	地 境	作物	面積(付只)	取得 經 緯	備 考
祭條	每與味員 三每陽 得只田員 我羅好洪先員	皮牟 粟種 粟種	1石5斗付 1斗付 5升付	趙時安處 相換田 外祖父主前 衿得	戶婢 汝今 1所 生 奴 萬金 1口
長甥 姜渭道衿	別月山員 里內員 木橋旨員	粟種 麻子 粟種	2斗付 3升付 4升付	金潤玉·姜取橫兩處 買得合田 李揖處 買得田 婢 億生處 買得田	3필지
次甥 渭老衿	松樂員 里內員 木橋旨員	粟種 皮牟 粟	1斗5升付 2斗付 4升付	金潤玉處 買得田 母主 初謁別給 代[垵]田 婢 億生處 買得田	3필지
長姉代其子 高萬觀衿	松樂員 木橋旨員 郭岳押浦員	粟種 粟種 皮牟	8升付 1斗付 2石付只	趙繼胤處 買得田 折半北邊 婢 億生處 買得田 既已別給 貳庫 祖上傳來田	3필지
末妹 姜氏衿	松樂員 下加路員 木橋旨員	粟種 皮牟 粟種	9升付 7斗付 1斗付	趙繼胤處 買得田 折半南邊 梁遂赫處 買得田 婢 億生處 買得田	3필지
孀甥厚夏衿	每叱古泉員	粟種	6升付	趙繼胤處 買得田 奴 金孫處 買得田	1필지

위 <표 2>에 의하면, 여기서도 분할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나 재배 작물의 종류, 그 면적, 토지의 취득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가 있다. 분할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祭條로 재산의 일부를 우선 떼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선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재산을 이처럼 별도로 배정하는 것은 18세기 이래 朱子家禮의 보급과 장려로 조상숭배에 대한 기풍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朝鮮 후기 士大夫家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드는 일이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제사를 잘 받드는 일은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가풍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에게 분급되는 재산보다

도 掃祭條로 배정되는 몫이 후기로 가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었다.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에는 상속되는 몫이 20%로 규정되어 있으나 후대로 갈수록 이를 훨씬 더 상회한 것이다.

분재되고 있는 田地는 전체 16필지에 4석 9두 4승지기이며, 작물은 皮牟(4), 粟種(11), 麻子(1) 등인데 마자는 일반적으로 집 주변에 재배되었다. 재산의 소유래를 살펴보면 상환전과 매득전, 외조부로부터 갖득한 밭들로 이루어졌으며, 매득전의 경우는 노비에게 산 밭도 있다. 그리고 擘孀1필지에 6升부치기(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3필지씩 배당되고 있으나, 서두에서 균등히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듯이 전체 면적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長孀(큰 오래비)은 粟種(2)과 麻子(1)를 합하여 3필지에 2斗 7升부치기, 次孀은 粟種(2)과 皮牟(1)를 합하여 3필지에 3斗 9升부치기, 長_女는 粟種(2)과 皮牟(1)를 합하여 3필지에 2石 1斗 8升부치기, 末妹는 粟種(2)과 皮牟(1)를 합하여 3필지에 8斗 9升부치기가 각각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祭條(1石 6斗 5升부치기)는 長孀의 몫(합계 1石 9斗 2升부치기)에 포함될 것이다. 더욱이 長孀의 몫이 많은 것은 資料에 「旣已別給二庫」라 하였듯이 부모 생전에 떼어준 것(성혼일 별급)이 있었을 뿐 아니라 同生들의 養育에도 이바지 하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더 주어진 것이라 풀이된다. 또 長孀와 末妹의 상속분 가운데에는 밭 하나를 둘로 분할한 것도 있다.

또한 祭條에는 奴婢가 포함되고 있다. 즉 資料에는 「戶婢汝今一所生 奴萬金年二十一乙酉生 身壹口 永爲施行爲齊」라 하였다. 노비를 재산의 일부로 표시할 때에는 그 노비의 生母가 누구이며, 또 그 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 그가 몇 번째라는 것과 나이, 生年(干支) 등을 반드시 밝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여기서는 “戶婢 汝今의 첫번째 소생인 奴 萬金(21세, 乙酉生) 몸 1口”라는 뜻이다.

(3)의 都許禱記는 乾隆¹⁵⁾ 원년 丙辰, 즉 英祖 12년(1736) 정월 23일에 財主 高氏가 자식들 모두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그 증거로 작성한 分財文書이다. 여기서도 명칭이 都許禱記로 되어 있으나 실은 分給文記에 속한다. 즉 ‘都許禱記’는 곧 ‘都許與文記’로 자녀들 모두에게 일괄하여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재주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의 正室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돌이었는데 불행히도 이미 喪妻를 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小室을 얻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들에게 합당한 것은 나이가 자란 뒤에 각각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내 나이가 머지않아 늙어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약간의 田地 중 掃祭條를 떼어 놓다 보니 남은 것은 보잘 것 없는 재산이지만, 이를 각 자식들에게 ‘平均分禱’ 즉, 똑 같이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 田地의 면적(斗數)이나 토질의 좋고 나쁨(品劣)에 따라 不睦하여 서로 다툰 때에는 不孝로 논할 것이다. 文籍에 따라 元財主가 구획하여 처분하니, 오래도록 소유할 수 있게 나누어 주는 방도가 가련하지만 순리에 따라 화목하게 지내되, 만일 자손 중에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15) 乾隆(1736~1795)은 淸나라 高宗이 사용한 연호이다.

不孝로 논할 것이다. 어김 없이 시행하라.”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은 부모의 掃墳條를 우선 떼어 놓고 그 나머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平均分給’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재산 분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경계하면서 만일 자식들이 不睦하여 서로 다툰 때에는 不孝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다. 분재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區分	地境	取得經緯	作物	面積	備考
父母 掃墳條	水山里內員	外三寸叔主前 相換	?	1斗付	異姓四寸妹 梁氏家坐田
嫡長女給	長田里內員	家坐田 妻父主前 給得	皮牟	14石付	집 한 채 포함 5필지 里以南邊 同里南邊 給給 掃墳條
	加時水員	梁致殷處 買得田	皮牟	?付	
	告達員	妻父主前 成婚別得田	皮牟	14石付	
	—	□□云處 買得田	粟	5升付	
	同里以南邊	妻父主前 給得田	粟種	7升付	
次女給	長田里內員	梁世贊處 買得田	皮牟	1□□	4필지 同里以南邊
	加時水員	—	皮牟	7斗付	
	同里以北邊	流來田	粟種	1斗付	
	東海旨員	買得田	皮牟	10斗付	
孽長男山益給	水山里內員	外三寸叔主前 家基代田	?	?付	3필지
	同里以南邊	安壯去伊員 祖上流來田	粟種	3升付	
	新堂員	祖上流來田	粟	3升付	
次男山成給	水山里內員	祖上流來田	皮牟	7升付	3필지
	□長先員	祖上流來田	粟	5升付	
	同員	—	租種	? 乾畝	

위 <표 3>에 의하면 文記는 정실 소생과 소실 소생의 순으로 기재되었으며, 전답의 전체 면적은 16필지이다. 재주 재산의 所有來는 流來(祖業 5), 매득(4), 깃득(2), 상환(1), 별득(1), 집터(1), 기타(2)로 되어 있으며, 작물은 皮牟(7), 粟種(6), 租種(1), 기타(2)이다. 이를 正室 소생의 두 딸에게는 각각 5필지와 4필지, 小室 소생의 두 아들에게는 3필지씩을 각각 분할해 주고 있다. 면적은 탈락된 곳이 있어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도 재산은 그 당시의 예에 따라 ‘平均分給’ 즉, 똑 같이 몫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부모의 遺産 모두를 똑 같이 나누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承重位¹⁶⁾ 몫으로 재산의 일부를 우선 떼어 놓고, ‘그 나머지 재산’을 똑같이 나누

16) 祭祀를 承繼하는 자를 承重子라 하였는데, 그에게는 다른 衆子에 비해 祭祀條를 더 지급(加給)하였다. 즉 『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父母奴婢 承重子加五分之一 衆子女平分」이라 하였는데, 그 注에 “토지도 이와 같다”고 한 내용을 들어 노비와 한 가지로 적용시킨 것이다.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차등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장녀 몫의 말미에 기록된 같은 마을 남쪽의 粟種 일곱 되부치기는 “〈자기가 죽은 뒤에〉 그 밭에 매장하고 掃墳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장녀에게 넘겨준 일종의 掃墳條인 것이다.

그런데 이 都許祔記도 財主가 高氏이고 筆執이 長女婿인 幼學 姜渭老인 것으로 보아 高氏 집안의 分財文書가 분명하며, 다만 이 문서가 姜氏 집안에 소장되게 된 것은 高氏 집안의 큰 사위인 姜渭老가 分財 때에 그의 몫으로 넘겨 받은 文書였던 것이다. 즉 乾隆 3년, 즉 英조 14년(1738) 12월에 姜渭老(年四十六 癸酉 本 晉州)가 제주목으로 부터 발급받은 「准戶口」에 의하면 「妻高氏年四十五甲戌本濟州 父展力副尉兼司僕泰義年八十一戊戌」이라 하였으므로, 財主는 高泰義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姜渭老의 나이는 44세 였다.

(4)의 別給都許文은 乾隆 19년 甲戌, 즉 英祖 30년(1754) 9월에 財主(父)인 留鄉座首 姜渭道가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分財文書이다. 명칭이 別給都許文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分給文記에 속한다. 즉 ‘別給都許文’은 이미 자식들에게 별급한 것과 재산 분할 때에 새로 자식들 모두에게 나누어 준 내용을 합쳐서 한 문서에 기록했다는 뜻이다. 본 문서에서 財主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두 번에 걸쳐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우선 서두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본디 가난하지만 약간의 田地를 자녀들의 初滿日과 成婚日에 別給하고 남은 것은 數畝의 薄田 뿐인 즉, 〈이미〉 別給한 것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서 給급(給給 : 分給)의 例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別給한 것이 혹 均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別給한 재산을 모두 給급한 것과 합하여 계산하되, 앞에는 이미 別給한 것을 기록하고 뒤에는 加給한 것(너 준 몫)을 기록하여 ‘不均分給’ 즉, 똑 같이 몫을 나누어 주고 〈이를〉 구별하여 기록하므로, 앞으로 이 내용대로 소유하여 사용(경작)하되, 後嗣가 없는 三寸 두 叔父母님의 掃墳과 奉祭 방법도 또한 사리를 논하여 말미에 붙여 열거하니, 이에 따라 준수하여 시행하라.”

고 하였는가 하면 追記의 내용에는,

“후사가 없는 삼촌 숙부모님의 掃墳과 奉祭도 각각 말을 사람을 지정하니, 그들로 하여금 奉行하다가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하되, 후사가 없는 傍親의 奉祭와 先世의 奉祀”는 차이가 있다. 承重家에 만일 후사가 없다 하더라도 “직계 자손 외에 외손으로는 넘어갈 수 없거니와, 이러한 경우에 〈제사를〉 맡은 집에 만일

17)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에는 「石嫡長子 無後卽衆子 衆子無後卽 妾子奉祀 傍親之無後者 奉祭」라 하여, 만일 嫡長子에 아들이 없으면 衆子가, 衆子가 아들이 없으면 妾子가 제사를 받든다. 傍親 가운데 뒤 이을 자손이 없으면 先祖의 祠堂에 합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자식이 없어서 외손에게 넘어갈 지경에 이르면, <이는 소분조과 봉제조를> 설치하지 아니함만 못하고, 제사를 폐해야 할 한탄을 면하기가 어렵다. 행여 외손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거든 나의 자손들이 회의를 얻어, 이를 姪孫에게 전하도록 하고 외손에게는 넘어가지 않게 하라.”

고 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外孫에게 제사가 넘어가는 것 즉, 外孫奉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¹⁸⁾

17세기 초반까지는 長子奉祀와 아울러 출가한 딸들도 친정 부모의 제사를 돌아가며 받드는 관습이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적장자의 우위상속제가 확립되면서 딸들에게는 친정 부모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아들만으로 제사를 돌려가며 봉행하다가 그것도 18세기에 와서는 적장자 奉祀제에 따라 적장자를 제외한 衆子들에게조차도 부모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진다.¹⁹⁾ 오늘날의 관습처럼 오직 宗家, 즉 적장자의 집에서만 제사를 봉행하는 풍습이 이때부터 점차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후사가 없는 仲叔父母님의 掃墳祭條는 제2亡子 泰翁이, 季叔父母님의 소분제조는 제3자 文翁이 각각 맡아서 봉행하다가 後嗣에게 전하도록 하고 있다. 분제의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區分	地境	取得	作物	面積	備考
祭條	別月山員 明月鎮西門外 月溪員	傳來田 買得畝	皮牟 租種	3石付 1斗5升付	2필지, 1석 3두 5승 承重孫婦 初謁之日許給, 祭條還元
長子故聖翁衿	別月山員 加樂里內員 徐家垵田 於道內牛叱介畝員 東來田員草田	傳來田 別得 傳來田	皮牟 皮牟 皮牟 粟	3石付 8斗付 1石付 8升付	別給 1필지 加給 3필지 4필지
二子故泰翁衿	開與只旨員 加樂里西洞員	買得田 買得田	粟 皮牟	1斗5升付 4斗付	別給 1필지 5필지

18) “後嗣가 없다”는 말은 곧 “無後”를 품어한 것으로, 이 無後에 대해서도 嫡子만이 없는 경우와 嫡子와 妾子가 다 없는 경우의 어느 것을 의미하는 가로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다.

19) “祭祀相續은 男系の 男長子主義여서 아들이 없으면 同宗의 支子를 세워서 後嗣로 삼았다. 女系の 자손으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外孫奉祀라 해서 실제로는 행해졌지만 이를 祭祀相續으로 논할 수는 없다.” 라는 견해가 있다. 朝鮮總督府編: 『李朝の財産相續法』 1983(復刻版) p.22.

20)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木橋旨金千同員 登子員<3곳> 東來田太好員草田	買得田	粟 粟 粟	2升付 5升付 7升付	加給 4필지
三子文翁衿	頓田員 地方乏員 <3곳> 梅花泉員 東來田員草田	別得 買得田	皮牟 粟 粟 粟	1石5斗付 7升付 5升付 8升付	別給 1필지 加給 3필지 } 4필지
四子德翁衿	地見田員 加樂里內員 下加樂里 東吾終終員 東來員 草田	別得 買得 買得	皮牟 皮牟 皮牟 粟	1石付 4斗付 1石付 8升付	別給 2필지 加給 3필지 } 4필지
長女梁言植衿	加樂里內員 光令里 南孝子門員 光令 南嚴木洞員<3곳> 加樂里 西眞木員	買得 傳來田	麻子 粟 粟 皮牟	1斗4升付 1斗付 1斗5升付 3斗付	別給 2필지 加給 2필지 } 4필지
二女金重兼	加樂先□□員 同里 南百只旨員 都近里 南孟與池員	買得 別得 傳來田	皮牟 皮牟 皮牟	1石付 3斗付 10斗付	別給 2필지 加給 1필지 } 3필지
三女吳廷掄衿	大靜江丁邊水員 加樂里內員 老伊金洞山員 <4곳> 同員 <2곳> 里內員	傳來畚 買得田 買得 買得 買得田	租種 皮牟 粟 粟 麻子	2斗付 3斗付 6升付 1升付 3升付	別得 2필지 加給 3필지 } 3필지
仲叔父母主 掃墳祭	加樂里內員 於加樂員 長田西邊 木橋旨員金千洞 <2곳>	空田 祖上	皮牟 皮牟 粟	3斗付 1石付 4升付	3필지
季叔父母主 掃墳祭條	加樂西洞 城田員 於加樂員 長田東邊 別月山員 所泉乏員草田 <4곳>	祖上田 買得田	皮牟 皮牟 粟 粟	12斗付 1石付 8升付 7升付	4필지

위 <표 4>에 의하면, 序頭에 밝힌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배당된 토지는 初謁日이나 成婚日에 이미 떼어 준 것(已別給)과 재산 분배 때에 새로 더 준 몫(加給)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 祭條에 배당된 토지 중 夫氏에게 산 明月鎭 서문 밖 月溪員의 租種 한 말 닷 되부치기 水畚은 承重孫婦의 初謁日에 이미 許給하였으나 祭祀지낼 논[畚]이 없으므로 奉祀條로 돌린다고 하였으며, 각자의 배당된 몫의 말미에는 지경이 표시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인명이 거론된 곳도 있다. <>의 안은 해당 지경의 몇 개 밭을 합한 면적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경작지의 규모가 극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답의 전체 면적은 38필지에 17석 11두 3승부치기이며, 재배 작물은 皮牟(18), 粟種(16), 租種(2), 麻子(2) 등이다. 재산의

형성 과정은 조상유래(전래 8), 매득(14), 별득(4) 垓田(1), 기타(11)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5)의 都許文은 嘉慶²¹⁾ 연간에 財主(父)인 留鄉別監 姜氏가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그 증거로 작성한 자필 分財文書이다. 명칭이 都許文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分給文記에 속한다. 즉 '都許'는 '都許與'의 약칭으로 자녀들 모두에게 일괄하여 재산을 許給한다는 뜻이다. 연대가 탈락되어 자세한 분재 연월일은 알 수 없으나 族講上으로 보면 본 분재문서의 財主가 姜大翁인 것으로 확인되며, 또 그가 생시에 官衙로부터 발급받았던 '準戶口'가 여러 장 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의 생년은 1726년 丙午生이니, 그의 81세가 되는 해는 嘉慶 11년 丙寅, 즉 純祖 6년(1806)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분재문서는 이 해 10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두를 보면,

“내 팔자가 기막하여 初娶에 딸 둘을 얻었는데 일찍 사망하였고, 後娶에 3남 1녀를 얻었으나 둘째 아들 및 막내딸은 天然痘로 여덟 살에 죽어서 참혹함을 이길 수 없다. 나의 삼촌 숙부님이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나의 막내 아우를 후사로 정하여 기르다가 열 다섯살에 일찍 죽으니, 도리어 의탁할 곳이 없어서 나를 조가의 禮로

21) 嘉慶(1796~1820)은 淸나라 仁宗이 사용한 연호이다.

22) 당시 재산을 넘겨 주면서 작성했던 문기는 다음과 같다.

乾隆貳拾陸年辛巳 柒月拾柒日 □□□姜大翁處 許與文

右許與文事段 吾身天賦險惡 □□□□生 兄之末子一歲兒 定後收養是如可 年當十五 天運不幸 □□□□更無奈何 毋欲死地 惡命未盡 然且吾矣夫妻年當七十 俱抱身 □□□□□生無所倚 死亦失路 豈不悲痛哉 勢不得已 姪子大翁病已出 吾矣夫妻生養 □□□委於擔當次 吾子田番等物 一半掃墳祭條成置 而一半及家與家財 馳贈等物並只 同大翁處別許爲去乎 依此親時爲手矣 所謂諸墳祭條之物段 勿爲輕分 而內(外孫中) 專流後嗣是遺 勿許外人非以 永久施行事

一 吾矣同生等和會時 許得是在 上加樂里 □□□送 送落員 粟種壹斗伍升付 及妻父前許得是在家坐田 皮牟參斗付 及門 □□□□妻外三寸叔母金召史處買得田 皮牟壹斗付 及家以南邊 妻外四寸委召史處買得田 皮牟參斗付 及家以北邊 梁召史處買得田 麻子柒升付 及長田里內員 高尚齊處買得田 皮牟玖斗付 及同田一邊梁信贊處買得田 皮牟肆斗付 及里以都邊 妻父前許得田 古達員 皮牟壹石付 及加時水員 高萬玉處買得田 粟柒升付 及里以東邊 能先員 尹商著處家基代相換田 皮牟壹石玖斗付 及同員 梁召史處買得畚 貳夜末(末) 合租種貳斗付 及流水岩里以北邊 豬水員 梁遇孟處買得畚 夜末 合租種柒升付 及里以西邊 在公田員 梁召史處買得田 皮牟壹石付 及水山里以北邊 卍代員 朴恒富處買得畚 租種柒升付 及同員 金淵周處買得畚 租種柒升付 及補音水員 張厚昌處買得畚 租種柒升付只等物 吾矣夫妻掃墳祭條施行爲齊

一 長田里以北邊 黃木員 高汝立處買得田 貳庫合皮牟陸斗付 及西邊 李在基員 姜仲望處買得田 粟種貳斗付 及同員 金時進處買得田 粟種伍升付 及同員 梁召史處買得田 粟壹斗伍升付 及里以南邊四命田 李召史處買得田 皮牟壹石付 及 □伊基員 妻父前許得田 皮牟伍斗付 及馬古里水員 朴順厚處買得畚貳夜末 合租種參升付 及里以東北邊 月羅木員 梁貴成處買得田 皮牟壹石付 及里以西邊 無白北只員 李召史處買得田 粟種壹斗付 及水山里以北邊 公泉員 梁致安處買得畚租種壹斗付 及家與家財馳贈等物 並只 吾矣夫妻生養次 同大翁處 別許爲去乎 依此親時者

一 花松員 婢至今處買得田 皮牟肆斗付段 妻母主爲祭 妻外姪子委道齊處 別許是齊

一 兩邊親姓等 成婚初調日 每人 □□壹庫田 別許爲有置 或有雜談者是良置 持此文記下正事

財主 自筆執 留鄉別監 姜渭老(手決)

맞이하므로 같이 살며 받들어 모신 즉, 家財·田畝·駟畜 등의 재산을 넘겨 주었다.²²⁾ 지금 내 나이 81세에 몸에 병이 떠나질 않아서 오히려도 자리가 편하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르니, 앞으로 살 날도 많지 않아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田畝과 駟畜 및 나 자신이 매득한 전답들을 합계한 후, 삼촌 夫妻님의 掃祭條, 우리 夫妻의 소제조를 만들어 두고 남은 약간의 밭들을 자녀들에게 각각 분급하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나이가 차지 않고 죽었으니 형세가 참혹하기 그지없다. 그러므로 밭 한 곳을 掃條로 만들어 두고 각각 아래에 열거하여 기록하므로 文記 내용에 따라 소유하되, 掃祭인 경우는 혹 子孫이 미약하여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지라도 子孫이 팔지 못하게 막아서 말리고 和議하여 변통하되, 遺跡을 좇아서 맡겨버린다면 비록 지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찌 편안하겠는가. 너희들은 명심하여 잊지 말고 영원히 시행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後嗣가 없는 삼촌(姜渭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때문에 삼촌 夫妻의 祭條가 우선적으로 설정되고 있고 또 그 奉祭가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承繼되고 있다. 즉 여기서는 奉祀의 대상이 세분되어 명시되면서 그에 따른 봉사의 몫도 정해지고 있다. 본재의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區分	地境	取得	內譯	作物	面積	備考
三寸夫妻主 掃祭田畝	能先員	—	—	皮牟	1石9斗付	
	古達員	—	—	皮牟	1石付	
	加時勿員	墓坐出	—	粟種	7升付	
	流水岩里 頓木員	—	畚貳夜味合	租種	7升付	
	水山公泉員	—	乾畚壹夜味	租種	1斗付	
吾矣夫妻 掃祭田畝	里內員	買得出	貳庫合	皮牟	1石付	
	同里內員	流來出	貳庫合	皮牟	13斗付	
	能先員流來	—	乾畚參夜味合	租種	2斗付	
	馬古伊水員	—	乾畚二夜味合	租種	3升付	
	洞生伊員	袴得出	—	皮牟	1石付	
長子應新處袴	里北 眞木同內員	流出	貳庫合	皮牟	7斗付	亡子女掃條 長婦別給
	里內員	流來出	參庫合	皮牟	6升付	
	上加南邊 別月山員	祭田	南邊	皮牟	3石付	
		買得	北邊	皮牟	3石付	
	亭子基員	流出	—	粟種	2斗付	
	同員	—	—	粟	5升付	
	月羅頂員	流來出	—	皮牟	1石付	
	古達不喻畚員	買得出	—	皮牟	1石5斗付	
	成萬以田員	相換出	—	粟種	3升付	
	頓基員	買得出	—	皮牟	3斗付	

	水山里北邊 坪代員 甫飲木員 松岩木員	流來畚 — 買得	貳夜味合 乾畚壹夜味 —	乾租 租種 皮牟	1斗4升付 7升付 5斗付	
次子應龍處衿	才公田員 亭才基員 頓基員 勻成伊水員 牛路里東邊 北旨員 才前伊旨員 里內員 同員 同員	流來田 流來田 流來田 買得田 買得田 買得田 買得田 買得田 買得田	— — — — — — — — —	皮牟 粟種 皮牟 皮牟 粟種 皮牟 麻子 皮牟 粟種	1石付 1斗5升付 5斗付 1石5斗付 1斗付 2石付 3斗付 2斗付 2升付	
長女處衿	土加 遠場員流田	—	—	皮牟	1石付	雌馬 雌牛 各 1
次女處衿	里以南邊 者郎員	買得田	—	牟	1石1斗付	雌馬 1匹
長孫聖聖處衿	四明伊員 大連伊旨員 同員	流來田 買得田 流來田	— — —	皮牟 粟種 粟種	1石付 1斗付 3升付	

위 <표 5>에 따르면, 전답의 전체 면적은 37필지에 23석 12두 2승부치기이며, 재산의 所有來는 매득(13), 유래(11), 깃득(1), 상환(1), 菜坐(1), 祭田(1), 기타(9) 등이다. 작물은 皮牟(21), 粟種(9), 租種(6), 麻子(1)의 순이다. 분재 상황을 보면, 우선 掃祭條의 경우 삼촌 부처의 소재지가 5필지에 2석 11두 4승부치기, 본인 부처의 소재지가 3석 3승부치기(3두 9승 차이)로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분급된 경우는 물론 서두에 '平均分給'이란 언급은 없지만 자녀간에 분급된 몫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남이 13필지에 10석 9승부치기인데 비하여 차남은 9필지에 5석 2두 7승부치기이며, 두 딸은 각기 마소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녀가 1필지에 1석부치기, 차녀가 1석 1두부치기를 분할받았다. 특히 여기서는 장손에게도 재산이 분급되고 있는데 그 분급량은 두 딸과 비슷하다.

그런데 장자 몫에는 亡子女, 즉 둘째 아들과 막내딸의 掃條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長婦別給, 즉 장부의 초알일에 지급되었던 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6)의 都許文은 道光²³⁾ 12년 癸巳, 즉 純祖 33년(1833) 4월 14일에 元財主(未詳)인 前座首가 자필로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문서이다. 그런데 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와 간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癸巳로 되어 있는 간지는 道光 13년에 해당하며, 12년의 간지는 壬辰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대개의 경우, 문서 작성자들이 年號보다는 간지를 비교적 정확히 아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본 문서의 분재시기는 간지를 따라 純祖 33년으로 추정하였다. 財主의 이름도

23) 道光(1821~1850)은 淸나라 宣宗이 사용한 연호이다.

문서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족보상으로 보면 姜應新인 것으로 확인된다. 서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내 나이가 75세를 당하여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약간의 전지와 얼마 안 되는 재물들을 분급하는 일이다. 이는 선인들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내 나이 40에 1녀 2남을 얻었으나 불행히 아내가 죽고, 47세에 아버지의 命에 따라 소실 高氏를 얻어 3남을 낳았는데, 부모님을 삼가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었고 부모님의 임종 때에도 곁에서 깊이 사랑하며 삼가 모시어 끝까지 효성을 다하였으니, 그 정분이 內室 俞氏의 생사와 조급도 다름이 없었다. 부모님 생시에도 여전히 사랑하였으니, 그 법도는 효경에 실려 있다. 부모님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이로써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니, 사리를 논하여 명심하고 바꾸지 말라. 공경하여 계모를 섬기되 내 의당히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며,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막대하다. 아아, 조급이나마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데 불과할 뿐이지만, 내가 먼저 죽을지라도 혼백은 생사와 같이 늘 집에 있으리니, 모시어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추후도 명을 어기는 일 없이 존행하되 삼가 효행의 이치를 생각토록 하라. 부모님 전후의 三位, 從祖父母님 兩位, 우리 夫妻 兩位, 小室 高氏 一位의 掃祭條를 각각 만들어 두는 외에 남아 있는 것을 각각 열거해 기록하여 분급하므로, 분재 기록에 따라 준행한 후 紛亂하거나 만일 준행하지 아니하는 실마리가 있으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설 것인가?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할 것이며, 뒤에 만일 主孫이 가난하여 봉행할 수 없거든 衆孫들이 힘을 합하여 소제전을 갈아 먹으며 삼가 제사를 받들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거나 험값으로 마구 팔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의 칭송을 바라며 명세에 걸쳐 돈독해야 할 것이다. 너의 衆子들은 내 말을 떼어 먹지 말고 분명히 밝혀서 차례로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되 명심하여 잊지 말도록 하라.”

즉 여기서도 奉祭祀가 다른 사람, 즉 外孫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여, 만일 主孫이 奉行할 수 없으면 衆孫들이 掃祭田을 갈아 먹으면서 교대로 이행하라고 하였다. 즉 父系祖上의 제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同族觀念의 고취와 단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분재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區分	地境	取得	內譯	作物	面積	備考
從祖父母主 兩位掃祭田	地境田員			皮牟	1石7斗付	
	水山 公泉味員		乾畚一夜味	租種	1斗付	
	流水岩 終心堂員		水畚二夜味合	租種	5升付	
父母主三位 掃祭田	里內 前田員		一庫	皮牟	13斗付	
	里內員 姜氏右永		四庫合	皮牟	1石付	
	能先伊員		乾畚三夜味	租種	2斗付	
	馬古伊水員		水畚二夜合	租種	5升付	

吾夫妻兩位 掃祭出	上加 別月山員 能先伊員	買得 買得	衿下田 乾畚一夜味	皮牟 租種	3石付 1斗付	
長子姜元悅衿	水田員 地境田員 長同山員 里內齒基 里內數屹月老 臥乎岳員 敦浦境 非乙於田員 木橋旨員 同員 福萬同山員 水山泥田 橋月員 於音月老員	流來田 流來田 買得出 — 流來田 買得出 — 流來田 — 流來畚 —	— — — — — — — — — — 乾畚貳夜味合	皮牟 皮牟 粟種 麻子 皮牟 皮牟 粟種 粟種 粟種 租種 粟種	1石5斗付 1石付 1斗付 2斗付 2斗付 1石付 1斗付 1斗付 1斗付 1斗2升付 4升付亡弟掃祭條	雌馬 1匹 雌牛 1首 農牛俱械 1首 斗入鼎子俱盖 1坐躡子1 家舍1(鞭)材木 買給 父主居舍三間 1鞭下
次子姜允悅衿	能先員 地境田員 念首旨員 城田員 同員 里內員 坐東邊 北邊 其他 木橋員	買得 買得出 買得出 買得出 流來田 — — 掃祭出 流來田	— 二合 — 一庫田 — — — — 貳合	皮牟 皮牟 粟種 皮牟 皮牟 皮牟 皮牟 皮牟 粟種	1石5斗付 1石付 1斗5升付 1石付 2斗付 5升付 1斗付 6斗付 1斗付	家舍 2鞭 雌馬雌牛各 1首 農牛俱械 1首 斗入鼎子 俱盖 1坐
妹氏子息衿	買得出 臥乎岳員 里內員 雌馬壹匹 農牛壹首 斗入鼎子俱盖壹坐 雌牛壹首代	— 買得出	—	皮牟 皮牟	1石10斗付 4斗付 家坐出	正木參疋給
少家高氏處	里內前田 南邊 水山 泥田洞員	— —	— 乾畚壹夜味	皮牟 租種	3斗付 3升付	雌馬 1匹 雌牛 1首 別給 祭條
三子姜言悅衿	同好召旨同山員 公泉味員 亭子基員 召吉射場員 木橋旨員 ?	買出 買得 流來田 買得出 — 買得出	— — — 數合	皮牟 皮牟 粟種 皮牟 粟 皮牟	7斗付 6斗付 7升付 7斗5升付 1斗付 5斗付	雌牛 1首 雌馬 1匹 斗入鼎子 俱盖 1坐 家舍三間 1鞭 材木代給
四子姜云悅衿	召吉射場員 宗南伊洞員 亭子基員 木橋旨員 敦旨田 里內古基 井實成黃堂員	買得出 衿給出 — — — —	— — — 上下二庫合	皮牟 皮牟 粟種 粟種 麻子 粟種	7斗5升付 4斗付 5升付 1斗3升付 2斗付 1斗5升付	雌牛 1首 斗入鼎子 俱盖 1坐 家舍三間 1鞭 材木代給
五子姜善悅衿	宗南伊洞員 同員 所臥南田員 次南同山員 許伊進月老 里內員	買得出 — 衿給出 買得 流來田 買得出 買得	— — — — — — —	粟種 皮牟 皮牟 粟種 皮牟 皮牟 皮牟	6升付 4斗付 6斗付 6升付 買得 2斗付 2斗付 家坐 2斗付 并入	鼎子 些少器等物 農牛 同居末子 并給

위 <표 6>에 의하면, 전답의 전체 면적은 52필지에 20석 14두 1승부치기이며, 재산의 所有來는 매득(18), 유래(9), 짓급(2), 掃祭田(1), 기타(22) 등이다. 작물은 皮牟(29), 粟種(14), 租種(7), 麻子(2)의 순이다. 분재 상황을 보면, 從祖父母 兩位와 父母 三位, 본인 兩位의 소제조가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계속하여 자손들에게 전래되고 있다. 즉 다음의 道光 20년과 同治 12년의 都許文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표 7, 8 참조>. 그리고 분재 내용 중에는, 장자의 몫에 포함된 於音月老員의 粟種 ½ 되부치기를 亡弟의 掃祭條로 시행하도록 임의로 許給한다는 것과 少家高氏에게 특별히 배당된 몫은 生前에 갈아 먹다가 死後에는 그녀의 祭條로 만들어 둔다는 내용도 들어 있으며, 五子의 몫 말미에 同居末子라고 한 것은 현재 말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녀들에게 분배된 재산으로, 토지 외에 雌馬·雌牛·農牛·鼎子·家畚·鏟子 등 살림 밑천이 골고루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農牛는 俱械라 하여 그 소를 부리는데 필요한 제반 도구(쟁기 따위)가 포함되고, 鼎子(솥)는 한말들이, 한되들이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덮개를 포함시켰으며, 家畚는 3칸집 한 채를 기준으로 하여 물려주고 있는데, 집이 없는 경우에 재목으로 대신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妹氏의 자식에게도 雌馬, 農牛, 덮개 달린 한말들이 솥, 그리고 雌牛 한 마리 대신에 正木 세 필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7)의 都許文은 道光 20년 庚子, 즉 憲宗 6년(1840) 2월 14일에 元財主人 留鄕別監 姜氏가 5남 1녀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면서 그 증거로 작성한 분재문서이다. 원재주는 막연히 '姜' 이라고만 하였으나 족보를 통해서 그가 姜元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두의 내용에는,

“내 나이 63세에 이르니, 身病이 더욱 더 심해져서 조상의 제사를 지낼 염두를 내지 못하겠다. 장차 해야 할 일은 약간의 전답과 크고 작은 모든 재물들을 나누어 처분하는 일이니, 이는 선인들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내 나이 46에 4남 2녀를 낳았으나 불행히도 喪妻를 한 후, 小室과 동거하면서 1남을 낳았는데, 內室의 末女는 成婚한 뒤에 사망하여 잠으로 애통하기 그지없다. 우선 掃祭條의 항목을 나누는 것이 법에 합당하므로 從曾祖父母님 兩位, 祖父母님 三位, 父母님 兩位의 掃祭條는 이미 사리를 논하여 만들어 두었고, 우리 夫妻兩位 및 小室 俞氏도 모두 각각 掃祭條를 만들어 둔 후, 남아 있는 전답과 크고 작은 모든 재물을 약간씩 너희들에게 ‘平均分給’ 즉, 똑 같이 나누어 주어서 嫡庶를 구별하지 않고 고르게 지급하되, 너희 중 막내는 너의 형을 공경하기를 부모를 섬기는 것같이 하면 모든 근심은 이때부터 사라질 것이다. 내가 죽어서 黃天으로 돌아갈 적에 喪需 등의 모든 절차는 너의 형에게 더해질 것이니, 형이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함은 그 마음 속에 저절로 들어 있다. 내가 전하는 말을 각별히 좇아서 시행하기 바라노라. 아아, 衆子들은 너희 막내를 이와 같이 가엽게 여기되, 너희 5남 1녀가 仁義로 화목하고 遺言대로 준행하면 내 죽어서 지하에 돌아가도 魂情이 편안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찌 세상에 立身할 수 있겠느냐. 효자들은

내 말을 공경할지니, 내 말은 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仁和의 도리만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도리를 명심하여 잊지 말고 털끝만치라도 어기지 않아야 효자라 할 수 있느니, 어김 없이 시행하라.”

라고 하여, 여기서는 형제간의 友誼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본재의 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區分	地境	取得	內譯	作物	面積	備考
從曾祖父母主 兩位掃祭田	地境田	---		皮牟	1石7斗付	
	水山 公泉味員	—	乾畚壹夜味	租種	1斗付	
	流水岩 終心堂員	—	水畚貳夜味合	租種	5升付	
祖父母主三位 掃祭田	里內 前田員	—		皮牟	13斗付	
	里內 姜氏右永員	—	貳(肆?)庫合	皮牟	1石付	
	能先伊員	—	乾畚參夜味合	租種	2斗付	
	馬古伊水員	—	水畚貳夜味合	租種	5升付	
父母主兩位 掃祭田	上加南邊 別月山員	—		皮牟	3石付	
	能先伊員	—	乾畚壹夜味	租種	3斗付	
吾矣兩位 掃祭田	長同山員	—		粟種	1斗付	
	水山泥田 橋木員	—	乾畚貳夜味合	租種	1斗2升付	
長子 永處衿	里西邊 於昔月員	流來出		粟種	4升付	家鞭三間 2鞭 農牛俱械 斗入鼎子俱蓋 1倍
	旨田員 里東南邊	流來出		皮牟	5斗付	
	里內員 藪月路	流來出		皮牟	1斗付	
	里西邊 火連伊旨員	流來出		粟種	2升付	
	召吉南邊 木橋 福萬伊司山員	流來出		粟種	1斗付	
	家基	流來出		麻子	2斗付	
二子 赫處衿	里東南邊 水田員	流來出		皮牟	8斗付	農牛 1首 雌牛 1首 斗入鼎子 1介
	大連伊旨員	流來出		粟種	5升付	
	木橋員	流來出		粟種	4升付	
	家基里內員	相換出	買得	麻子	1斗5升付	
三子 濞處衿	里南邊 四明伊田員	流來出		皮牟	7斗5升付	升入鼎子 1介
	家基代衿 大連伊旨員	流來出		粟種	3升付	
	旨田員	流來出		皮牟	9斗付	
	木橋員	—		粟種	6升付	
四子 弘處衿	里南邊 四明伊田員	流來出		皮牟	7斗5升付	雌牛 1首
	家基代衿 里東南邊 水田員	流來出		皮牟	11斗付	
	木橋田員	流來出		粟種	5升付	
五子 彌處衿	臥乎岳員	流來出		皮牟	1石付	草家四間 1鞭 雌牛 1首
	家基	相換出	買得	麻子	1斗5升付	
	大連旨員	流來出		粟	2升付	
女氏處衿	文掌議同山員	相換出	妻衿給	粟種	4升付	

위 <표 7>에 의하면, 전답의 전체 면적은 32필지에 11석 10두 7승부치기인데, 그 중 皮牟는 12필지에 10석 9두부치기, 粟種은 11필지에 5두 5승부치기, 租種은 6필지에 6두 2승부치기, 麻子는 3필지에 5두부치기이다. 분재 상황을 보면, 從曾祖父母 兩位(1석 8두 5승부치기), 祖父母 三位(1석 15두 5승부치기), 父母 兩位(3석 1두부치기)의 掃祭條는 그대로 전래되고 있으며, 여기에 財主兩位의 소제조(2두 2승부치기)가 첨가되고 있다. 자녀들에게 분할해 준 경우를 살펴보면, 장남은 6필지에 총 면적이 9두 6승부치기, 차남은 4필지에 10두 4승부치기, 3남은 4필지에 1석 2두 4승부치기, 4남은 3필지에 1석 4두부치기, 5남은 3필지에 1석 1두 7승부치기, 그리고 딸에게는 1필지에 4승부치기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면적으로 보면 딸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면적이며,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재물을 지급하여 相殺하고 있는 듯하다. 즉 장자에게는 3칸집 2채와 쟁기 등의 연장을 갖춘 農牛, 뒷개가 있는 한말들이 술 1좌, 차남에게는 소 2마리와 한말들이 술 한 개, 3남에게는 한되들이 술 한 개, 4남에게는 암소 한 마리, 5남에게는 4칸집 한 채와 소 한 마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자와 함께 5남에게도 집 한 채가 지급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딸에게 지급된 분량이 적은 것도 주목된다.

(8)의 都許文은 同治²⁴⁾ 12년 癸酉, 즉 高宗 10년(1873) 7월 28일에 財主인 前 齋任이 4남 1녀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면서 그 증거로 작성한 분재문서이다. 여기서도 재주는 前 齋任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족보를 통해서 姜仁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두에는,

“내 나이 팔순이 되니 운수가 아주 사납고 身病도 차도가 없다. 그러나 약간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도 본래 先人들의 예가 있는 것이다. 掃祭가 중대하므로 나의 從高祖父母님 兩位, 曾祖父母님 三位, 祖父母님 兩位, 父母님 兩位, 그리고 우리 夫妻兩位를 世代를 이어 만들어 두었으나 내 소생 4 형제 중에 長子가 눈이 멀어서 실로 가슴 아프고 괴롭다. 末子 宗伍는 出系하였으니, 우리 집 崑孫이 우선 제사를 받들고 삼가 수행하여 完久히 어기지 말되, 마음 속에 새기어 두고 오래도록 잊지 말고 준행하라.”

고 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에는 “出系한 宗伍가 末子로 되었으나 分財 내용에는 셋째로 되어 있어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분재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24) 同治(1862~1874)는 淸나라 穆宗이 사용한 연호이다.

〈표 8〉

區分	地境	內譯	作物	面積	備考
從高祖父母主 兩位掃祭田	地境田員		皮牟	1石7斗付	3필지(피모 1, 조종 2) 1석 8두 5승부치기
	水山 公泉味員	乾畚壹夜味	租種	1斗付	
	流水岩 從心堂員	水畚貳夜味合	租種	5升付	
曾祖父母主 三位掃祭田	里內前田員		皮牟	13斗付	4필지(피모 2, 조종 2) 2석 5승부치기
	里內 姜氏右水員	貳庫合	皮牟	1石付	
	能先伊員	乾畚參夜味合	租種	2斗付	
	馬古伊水員	水畚貳夜味合	租種	5升付	
祖父母主 兩位掃祭田	加樂南邊 別月山員		皮牟	3石付	4필지(피모 2, 속종 1, 조종 2) 3석 5두 6승부치기
	揮田 積入伊數員		粟種	6升付	
	臥岳員		皮牟	4斗付	
	能先伊員	乾畚壹夜味	租種	1斗付	
父母主 兩位掃祭田	長同山員		粟種	7升付	2필지(속종 1, 조종 1) 1두 9승부치기
	水山 泥田 橋木員	乾畚貳夜味合	租種	1斗2升付	
吾矣夫妻 兩位掃祭田	於音月路員		粟種	4升付	2필지(속종 1, 마자 1) 2두 4승부치기
	里內家基		麻子	2斗付	
長子宗明 衿給田	里東邊 月羅木員	貳庫合	皮牟	9斗付	2필지(피모 1, 속종 1) 家舍 2鞭 農牛 1首俱咸
	木橋旨員		粟種	3升付	
仲子宗寬 衿給田	東南邊旨田員		皮牟	5斗付	3필지(피모 2, 속종 1) 1석 8두 5승부치기
	月羅木員		皮牟	2斗付	
	木橋旨員		粟種	3升付	
三子出繼 宗伍 衿田	里南邊 泥田水員		粟種	4升付	1필지(속종 1) 4승부치기
四子有寬 衿給田	里南邊 平伊田員		皮牟	3斗付	3필지(피모 1, 속종 2) 3두 5승부치기
	里西邊 大連伊旨員		粟種	2升付	
	木橋伊旨員		粟種	3升付	
女衿給田	新德里南邊石數田員		粟種	3升付	1필지(속종 1) 3승부치기

위 <표 8>에 의하면, 전답의 전체 면적은 25필지에 8석 9두 7승부치기인데, 그 중 皮牟는 9필지에 7석 13두부치기, 粟種은 9필지에 3두 5승부치기, 租種은 6필지에 6두 2승부치기, 麻子는 1필지에 2두부치기이다. 분재 상황을 보면, 從高祖父母 兩位(3필지에 1석 8두 5승부치기), 曾祖父母 三位(4필지에 2석 5승부치기), 祖父母 兩位(4필지에 3석 5두 6승부치기), 父母 兩位(2필지에 1두 9승부치기)의 掃祭條는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단지 여기서는 祖父母 兩位의 掃祭條만 2필지(2두 4승부치기)가 추가되고 있다. 이로 보아 掃祭條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대로 長子孫에게 그대로 전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祭條를 제외하면, 장남은 2필지에 9두 3승부치기, 기타 집 두 채, 農牛 한 마리를 지급 받고 있고, 차남은 3필지에 7두 3승부치기, 3남은 出系이므로 1필지에 4승부치기, 4남은 3필지에 3두

5승부치기, 그리고 딸에게는 1필지에 3승부치기가 각각 지급되고 있어, 차등 지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분재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作成時期	分財記名	財主	相續員數	分財對象	取得經緯	栽培作物	其他
肅宗 31년 1705	都許稔記	父	3남 3녀	田·草家	祖上·買得·相換 別得·別給	皮牟·粟種	平分
英祖 원년 1725	和舍文	—	2남 3녀	田·奴婢	相換·稔得·別給 買得	皮牟·粟種·麻子	—
英祖 12년 1736	都許稔記	父	2녀 2남	田畵	相換·稔得·買得 流來·別得	皮牟·粟種·租種	平分
英祖 30년 1754	別給都許文	父	4남 3녀	田畵	流來·買得·貸出 別得	皮牟·租種·粟種 麻子	平分
純祖 6년 1806	都許文	父	2남 2녀 1孫	田畵·牛馬	墓坐·買得·流來 稔得·相換	皮牟·粟種·租種	—
純祖 33년 1833	都許文	父	5자 妹氏 少家	田畵·牛馬·鼎子 農牛·鎗子·家舍	買得·流來·掃祭 稔給·稔得	皮牟·租種·粟種 麻子	—
憲宗 6년 1840	都許文	父	5남 1녀	田畵·家舍·農牛 鼎子	流來·相換	皮牟·租種·粟種 麻子	平分
高宗 10년 1873	都許文	父	4남 1녀	田畵·家舍·農牛	—	皮牟·租種·粟種 麻子	—

위 <표 9>를 통해서 분재시기와 분재기의 명칭, 재주와 상속자의 수효, 분재 대상이 된 토지의 취득 경위와 재배 작물, 토지 이외에 주어졌던 물건 등을 소상히 살펴볼 수 있었다.

IV 結 論

지금까지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8건의 분재문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분재문서에는 어느 경우나 재주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당부하는 말을 서두에 남기고 있다. 주된 내용은 재산 분급에 따른 자식들 간의 갈등, 외손 봉사의 방지, 형제 간의 우의 등을 강조한 것이었다.

2) 8건의 분재문기 중 두 건은 金氏家와 高氏家의 문기로 파악되었다. 이는 두 집안에서 재산을 자

녀들에게 분급할 때, 姜氏宅으로 출가한 딸(혹은 사위)에게도 재산의 몫을 나누어 주고 그 증거로 작성해 준 문서였다.

3) 8건의 분재문기 중 7건에는 모두 祭條가 마련되어 있었다. 先祖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재산을 이처럼 별도로 배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여겼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제사를 잘 받드는 일은 조선시대 兩班家門의 家風이기도 하였으며, 朱子家禮의 영향도 크다.

4) 재산은 19세기 말까지도 '平均分給' 즉, "똑 같이 몫을 나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財主의 전 재산을 分財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 재산 중 祭條를 우선 떼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재주의 의도에 따라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을 보이고 있다.

5) 분재문서에서는 자녀들에게 분배된 재산으로, 田畝 외에 雌馬·雌牛·農牛·鼎·家舍·瓣子 등 살림 밑천이 골고루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6) 분재문서에는 분할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나 그 면적(落只나 付只로 표시), 재배 작물의 종류(皮牟·粟·租·麻 등), 토지의 취득경위(祖上田·買得田·相換田·別得田·別給田·衿給田·墓坐田 등)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7) 토지 소재지의 경우, 표기된 명칭은 순수하게 우리말로 된 표현을 漢字의 音 또는 訓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로 환원시키는 작업과 병행하여 재배 작물에 의한 경작지의 토질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8) 본 논고는 제주도 서북부지역 한 가문의 문서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결론만으로는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재기의 조사와 분석, 그것도 제주도 전지역을 포괄할 수 있을 때, 제주도 분재기의 총체적인 상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